3-9	재난회복 개념 명시 및 무형의 피해 기준 추가	행안부장관

□ 권고 내용

○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피해지역의 실효적인 회복을 위해 **「재난안전법」상 재난회복의 개념을 명시**하고, **사회적·환경적 영향에 따른 무형의 피해 기준을 마련**하여 **조사항목에 추가**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.

□ 이행 현황

○ **「재난안전법」** 제2조(기본이념) 및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에 '재난 피해에 대한 일상 회복' 개념을 명시한 **일부개정법률안 개정**('23.5.16.) 및 **시행**('23.8.17.)

○ 재난피해 범주에 **무형의 피해**도 **포함하는 사항**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**연구과제***로 **추진 완료**('23.2.~.12.)

* 「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재난 복구지원체계 개편연구」('유·무형의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' 내용 포함)

- 지역사회 회복, **지역 상업 회복*** 등을 위해 **무형의 피해까지 포함된 다양한 지원 방안** 마련 추진

*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을 통해 상업 피해에 대한 **소상공인 생계안정지원 신설**('23.7.25.)

○ 소상공인·중소기업·1차산업 **'경영안정 지원' 근거·기준 마련**('26.3.19.)

- 「재난안전법」 개정('25.5.27.) 및 하위법령*·고시**(3건) 개정 완료

*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('25.11.28.)

**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」, 「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」 및 「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」 개정('26.3.19.)

- **'25년 경북·경남·울산 산불 피해**에 대해 **개정 규정 소급 적용**, **복구계획 변경 수립**('26.4.9.) 및 **추가 지원**(약 62억 원) 실시

○ 마을 공동체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**마을단위 복구 시범사업 추진**

- 역대 최대 규모 산불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대해 단순 복구를 넘어서 마을 공동체 및 일상회복 지원 시설 시범사업 추진

※ 마을단위 복구·재생사업(행안부, 5개소), 특별재생사업(국토부, 2개소)